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결격사유 완화 등〉

■ 조정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26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식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3.
3. 회 부 일 : 2025. 1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결격사유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자에게는 벌금형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영구적으로 위원 위촉을 제한하고 있어 타법의 결격사유 수준에 비하여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 이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결격기간을 20년으로 결격사유를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결격사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위원의 결격사유 완화 등(안 제10조의2)

- 개정안은 위원의 결격사유 중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및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결격요건을 완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등 유통의 죄 및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 -----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죄----- ----- ----- -----
<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 폭력범죄
<신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 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 된 죄 ¹⁾
<신설>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

7. 미성년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u>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u> 7.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 제10조의2 제5호 또는 제6호----- -----.
--	---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벌금형 선고 받은 자의 결격사유 완화 관련

□ 먼저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조항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0조의2제5호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기존의 ‘모든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로 완화함.

□ 현행법은 범죄의 종류나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경미한 과실로 소액의 벌금형만 선고받더라도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동안 자문위원으로의 위촉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국가공무원법」 등 다수의 입법례가 특정 범죄(예: 횡령·배임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결격 요건을 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행 규정은 상당히 엄격한 측면이 있음.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입법례〉

구분	결격사유	해당 규정
국가공무원법	(업무상)횡령·배임죄+300만원↑벌금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위반+벌금	제60조(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직원이 될 수 없다.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업무상)횡령·배임죄+300만원↑벌금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벌금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에 개정안은 벌금형의 하한선(300만원)을 설정함으로써 위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경미한 과실범 등으로 인한 과도한 참여 기회 제한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따라서 개정안은 자문위원 직무의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결격을 유지하면서도, 경미한 범죄까지 일률적으로 배제하던 현행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나. 결격사유에 음란물 등 유포 및 스토킹 범죄자 추가 관련

- 다음으로, 결격사유에 음란물 등 유포 및 스토킹 범죄자를 추가한 조항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10조의2제6호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등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

-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등 유포죄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반복·지속될 경우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개정안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관련 범죄를 결격사유에 명시함으로써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자문위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등 다수의 공직 관련 법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후 3년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개정안은 관련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결격대상 범위 확대 입법례〉

법률명	규정내용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지방 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경찰 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결격사유 완화 관련

□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조항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0조의2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자문
위원에 위촉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10조의2제7호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자문위원 위촉 결격기간을 영구 결격에서 20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2022년 헌법재판소²⁾는 2022년 11월 24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이 확정된 자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제한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³⁾ 등⁴⁾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
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⁵⁾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은 영구 결격 규정을 삭제하고 10년
또는 20년의 기간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개정된 바 있음.⁶⁾

□ 개정안 역시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최근 입법 동향을 반영
하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도 결격기간을

2) 헌재 2022. 11. 24. 선고, 2020헌마1181

3)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9341호) 제33조(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4) 「지방공무원법」, 「군인사법」을 말함

5) 헌법불합치 결정 주요 이유

• 아동 및 미성년자 보호라는 목적은 정당하나,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여 범행 이후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떠
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공익 실현을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입
법목적을 실현하기에 적합한 여러 수단 중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
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됨.

6) 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영구’에서 ‘20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결격사유 완화 입법례 〉

법률명	규정내용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 다만, 「경찰공무원법」, 「영유아보육법」 등 일부 법률은 여전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영구적인 임용 또는 자격 취득 제한을 유지하고 있음. 이는 해당 직무가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업무 특성을 가지며,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결격사유 미완화 입법례〉

법률명	규정내용
경찰 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영유아 보육법	제21조의2(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초·중등 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따라서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결격기간의 완화여부는 자문위원의 직무 성격과 권한 범위, 미성년자와의 접촉 가능성, 공적 대표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가 있고, 결격 기간을 완화하는 경우 이를 「군인사법」 수준인 10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수준인 20년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한편, 민주평통은 개정안 제10조의2제6호 및 제7호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의견이고, 제10조의2제5호에 대하여는 결격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하고 타 입법례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개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⁷⁾을 제시함.

7) 민주평통 수정의견

현행	조정식의원 개정안	민주평통 수정안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 4. (생략) 5.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u> --- ----- -----	 5. <u>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u>

2. 벌금형의 분리 선고(안 제10조의3)

- 개정안은 안 제10조의6제5호의 죄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u>제10조의2제6호</u> 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 ----- <u>제10조의2제5호 또는 제6호</u> ----- ----- ----- -----.

- 현행법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은 「형법」 제38조⁸⁾에 따른 경합범 가중에 대한 특례로서, 특정 범죄(예: 공직선거법 위반, 성범죄 등)의 형량이 당연퇴직이나 결격사유의 기준이 될 때, 그 죄의 경중을 명확히 따지기 위해 다른 죄와 분리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통상적으로 “○○의 죄”와 같이 범죄유형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 그런데 안 제10조의2제5호는 범죄의 유형과 관계없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8)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경우'를 결격사유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법원이 분리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분리의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들이 동시에 재판받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나, 제10조의2제5호는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이후 2년이 경과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법원이 동시에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상황이 아니므로 통상적 분리선고 규정과의 체계적 정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한편, 민주평통은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법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268